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9월 17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

●대통령령 제30084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1천분의 13”을 “1천분의 1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,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며,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고용보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실업급여 제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3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9월 17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국토교통부장관 김 현 미

●대통령령 제30085호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을 제12조의4로 하고,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건설기계의 내구연한)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”란 타워크레인을 말한다.

②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(耐久年限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년으로 한다. 다만, 건설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(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